
2020년도 자체평가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계획, 2020. 5.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4-200-711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506호



목 차



I. 개요	1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3
III. 자체평가 대상	8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1
V. 자체평가 방법 및 일정	12
VI.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6
 【붙임】	
1. 주요정책부문 평가항목 및 세부측정기준	18
2. 관리과제 추진계획 양식	32
3. 관리과제 실적보고서 양식	39
4. 자체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50

1. 2020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 ☑ 국정과제 등과 연계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한 효과적 정책추진 지원
- ☑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 체계 전환

□ 국정과제 등과 연계를 통한 국정운영 책임성 제고

- 국정과제, 2020년도 업무계획 등을 자체평가와 연계하여 성과 창출 추진동력 확보
-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분기별)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 정책추진 지원

□ 정책성과·효과 중심으로 자체평가 체계 전환

- 향후 3년은 현 정부 임기 후반기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 받을 시기이므로 국민 체감효과 중심으로 평가 실시
- '정책성과·효과' 평가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평가** 실시(가점 반영)

* '20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조실) 반영

** '20년 정부혁신 실행계획(행안부) 반영

2. 수립 경과 및 계획

- 2020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마련('20. 3. 6.)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부서별 의견수렴('20. 3월 중순~4월초)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20. 4월)

<참고> 2020년도 평가항목 주요 변경사항

「'19년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정책형성 (20)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2. 과제수단의 적절성	10
2. 정책집행 (22)	1. 추진계획 준수정도	10
	2.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7
	3.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도	5
3. 정책성과 (40)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20
	2. 정책효과	20
4. 정책소통 및 환류 (18)	1.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	8
	2.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노력도	10
가점 (5)	· 자체평가 수행 참여도 · 자체평가 수행 기여도 · 국정현안 추진 노력도 기여도	5

「'20년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정책설계 (20)	1.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2. 과제수단의 적절성	10
2. 정책집행 (20)	1. 추진계획 준수정도	3
	2.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10
	3.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도	7
3. 정책성과 및 효과 (60)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20
	2. 정책효과	20
	3.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	10
	4. 정책 환류 노력도	10
가점 (5)	·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 국정현안 추진 노력도 기여도 (3점)	5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제7기 : 2020. 5. 1. ~ 2022. 4. 30.]

- 소위원회 2개, 외부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15명 및 내부전문가(기획조정실장) 1명으로 구성

('20.5.1.기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위원장	 윤종설 (61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 (現)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 (現)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장 ■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1 소위 부패 방지	 심재승 (63년)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 (前)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 영국 버밍햄대 공공정책학 박사
	 임준형 (68년)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 (現) 조달청 자체평가 위원 ■ (現)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 (前) 국조실 국정과제 평가위원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학 박사
	 이옥화 (57년)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 (前) 교육부 자체평가 위원 ■ (前)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 ■ (現) 문체부 공공기관 문화정보화수준평가위원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이주희 (72년)	청주대 법학과 교수	■ (現) 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 위원 ■ (現)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 위원 ■ (現) 청주지방검찰청 상고심사 위원 ■ 스위스 바젤대 법학 박사
	 김찬동 (65년)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現)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 위원 ■ (現) 대전시 분권협의회 위원장 ■ (現) 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이양 제3전문위원회 위원 ■ 일본 동경대 정치(행정)학 박사
	 박수정 (70년)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	■ (現) 기재부 국고보조금관리위원 ■ (現) 산자부 기타공공기관 운영위원 ■ (現) 행안부 자체평가 위원 ■ (前) 기재부 공기업경영평가단 위원 ■ 이화여대 행정학 석사
	 홍진이 (65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	■ (現) 전기안전공사 성과평가 위원 ■ (現) 행안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평가 위원 ■ (現)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일본 메이지대학 정치학 박사

구분	성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2 소위 권익 증진		주재복 (64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 (現) 한국갈등학회 회장 ■ (現)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 (前)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 (前) 행안부 민원제도 평가위원 ■ 고려대 행정학 박사
		최태현 (7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現) 과기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 (前)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 (前) 행안부 지방정부혁신평가단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학 박사
		이재은 (66년)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前)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 (前)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위원 ■ (前)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상황센터 정책자문위원 ■ (前)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위원 ■ 연세대 행정학 박사
		강영주 (77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 소장	■ (現)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 (現) 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이양 제3전문위원회 위원 ■ (現) 한국조직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
		김선혜 (65년)	(사)갈등해결과대화 상임대표	■ (現) 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現)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 (現) 과기정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학 석사
		박영만 (65년)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 (現)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전문위원 ■ 경북대 법학 박사
		이연숙 (65년)	법무법인 로플러스 변호사	■ (現)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 (現)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연세대 법학 석사
내부 위원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前) 권익위 상임위원·부패방지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 분야별 전문가 현황

(단위 : 명, %)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법조인	시민사회	공공기관	소계	
16	7(44%)	3(19%)	2(13%)	2(13%)	1(6%)	94%	1(6%)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원칙

- (운영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권익위 훈령 제215호)」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 (의사결정)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운영)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 위원회 구성·운영

- (전체위원회) 위원장, 각 소위원장, 내부위원을 포함한 자체평가위원 및 간사(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
 -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계획 심의·확정,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 수행
-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성, 과제특성 등을 고려해 2개 소위로 구성
 -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검토·심의·조사·연구를 수행
- (성과지표 T/F) 자체평가위원 중 정부업무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한위원을 중심으로 구성(3명)
 - 목표치 검토·평가 및 성과지표 신규개발 및 수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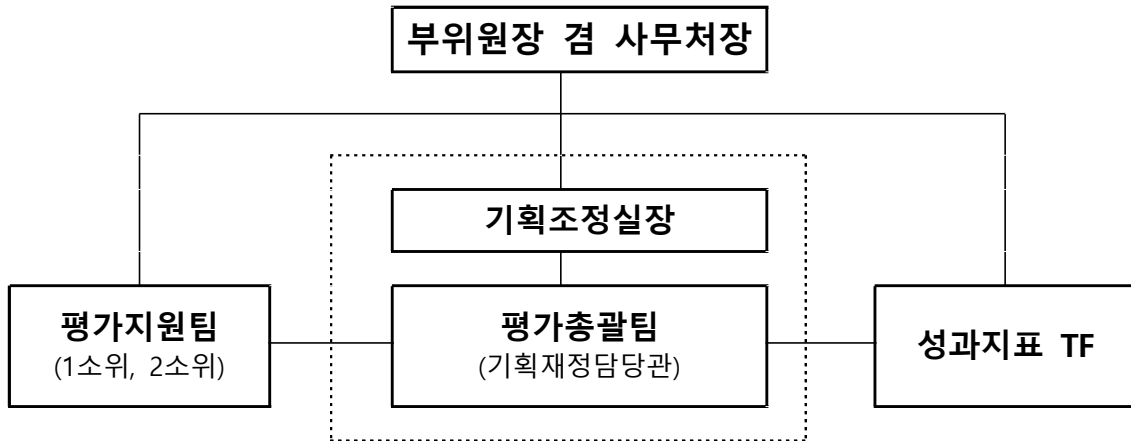
< 성과지표 T/F 구성 >

성 명	소속/직위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준형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제6기 자체평가위원(임기 : 2018.5.1.~2020.4.30.)

3.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 운영체계



□ 구성현황

구분	팀원(직책)	역할
평가총괄팀	기획조정실장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세부추진사항 -과제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전체회의 지원(반기별) -소위원회 개최지원(수시)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지원(수시)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기획재정담당관	
	백현수(기획재정담당관)	
	김대환(기획재정담당관)	
제1소위 평가지원팀	나현성(청렴정책총괄과)	○ 평가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현장조사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세부추진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분기별) -현장조사 시 소위원회 지원(수시)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작성·제출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이민이(청탁금지제도과)	
	김민지(청렴연수원)	
	홍혜연(청렴조사평가과)	
	임채식(생활적폐 대책 T/F)	
	이진아(보호보상정책과)	
	송영희(심사기획과)	
	이준민(공공재정환수제도과)	

구분	팀원(직책)	역할
제2소위 평가지원팀	최준영(민원조사기획과)	
	김남영(정부합동민원센터)	
	김기정(행정심판총괄과)	
	강현희(제도개선총괄과)	
	노성래(국민신문고과)	
	양은경(민원정보분석과)	

※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경우 기획재정부 평가지침에 따라 별도의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사업 평가 실시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부문

□ 평가대상 : 20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명	주요 내용	담당부서
I. 반부패·청렴시스템의 질적 고도화로 부패관행을 근절한다			
1. 반부패·공정 개혁을 완수한다			청렴정책총괄과
I -1-①	국민과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에 전력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공정 개혁 추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사회협약 확산 등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청렴정책총괄과 민간협력담당관
I -1-②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 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청탁금지법 등 보완, 현장형·실천형 교육 확대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조속한 법제화 추진 - 행동강령 제도운영 지원 및 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제도와 행동강령과
I -1-③	청렴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 미래세대 교육확대	청렴연수원
I -1-④	반부패 개혁 성과를 공공·민간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확산	- 공공부문 반부패 개혁 지원 및 공공·민간부문에 우수시책 전파 - 국가청렴지수 모형 개발 완료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청렴조사평가과 국제교류담당관
2. 국민 생활 속 불공정을 개선한다			심사기획과
I -2-①	제도 속 내재된 불공정 및 고질적 부패관행 개선	- 제도 속 내재된 불공정·특혜 개선 - 구조적·고질적 부패관행 지속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I -2-②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 및 생활 속 불공정관행·비리 개선 과제 발굴·추진상황 점검 및 홍보 -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 불공정·불합리한 공공기관 내부규정 점검	청렴정책총괄과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부패영향분석과
I -2-③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	- 신고자 보호대상·범위 확대로 보호망 강화 - 신고자 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감시 기능 강화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심사기획과
I -2-④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공공재정환수법」 안정적 시행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 실태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분석·개선	공공재정환수제도과

번호	관리과제명	주요 내용	담당부서
Ⅱ.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			
1.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 권익구제를 확대한다			민원조사기획과
Ⅱ -1-①	고충민원 적극처리로 국민고충·애로 해소	- 위법·부당한 행정 등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확대 - 집단민원 조정 강화 - 농·산·어촌,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민생·이동신문고 확대 및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	민원조사기획과 기업고충민원팀 산업농림환경민원과
Ⅱ -1-②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적 민원 상담	- 국민상담 요구에 충실한 대응 - 국민콜110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여 상담역량 강화 - 지능형 통합콜센터로의 개편 추진	정부합동민원센터
Ⅱ -1-③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심판	- 심판정보 접근성 제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사건 처리	행정심판총괄과
2.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반영한다			제도개선총괄과
Ⅱ -2-①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 국민 삶 속 포용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Ⅱ -2-②	정책의 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참여 확대	-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민원 신청·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 - 국민생각함 제안 아이디어의 공론화·정책화 확대	국민신문고과
Ⅱ -2-③	민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 민원분석의 적시성·정확도 제고로 정책환류 기능 강화 - 민원정보 공개 확대 및 각급기관의 민원분석 역량 제고	민원정보분석과

□ 평가 제외

○ 공통·지원 6개 부서 및 심사 2개 부서 제외*

*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법무보좌관,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2. 재정사업 부문

□ 평가대상

-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 정보화사업)이 평가대상
 - '20년도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준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여 대상과제 선정
 - 다만, 인건비·기본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단위사업은 제외

관리과제(단위사업)	소관부서
① 청렴권익 문화 확산	홍보담당관
② 청렴권익 대내외 협력 강화	국제교류담당관 / 민간협력담당관
③ 국민고충해소	민원조사기획과
④ 반부패 청렴정책 강화	청렴조사평가과 / 부패영향분석과 / 청렴연수원 / 행동강령과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신고자보호과 / 신고자보상과
⑤ 행정심판	행정심판총괄과
⑥ 부패고충 제도개선 및 국민 소통 활성화	제도개선총괄과 / 정부합동민원센터
⑦ 청렴권익 행정 정보화	혁신행정담당관 / 국민신문고과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평가대상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통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평가대상 분야	소관부서
조직 관리	혁신행정담당관
정보화 관리	혁신행정담당관
인사 관리	운영지원과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부문

※ 평가지표별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붙임1】 참조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판단기준	배점
1. 정책설계 (20)	1.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도	10
	2. 과제수단의 적절성	- 과제수단의 적정성 -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10
2. 정책집행 (20)	1. 추진계획 준수정도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3
	2.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여건·상황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대처 및 장애요인 개선·극복 노력	10
	3.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도	타부처/관련부서/외부기관 등과의 협업 성과	7
3. 정책성과 및 효과 (60)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 목표치 달성 정도	20
	2. 정책효과	종합적 정책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	20
	3.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 - 홍보의 효과성	10
	4. 정책 환류 노력도	중간 점검결과 개선·보완 및 적극적 관리 노력	10
3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100

2. 재정사업 / 행정관리역량 부문

- '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세부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 지표·기준 등에 따라 평가 시행

1. 중간점검

□ 점검기간

구분	시기	내용	대상기간
1차 점검	5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20.1.1 ~ 4.30
2차 점검 (상반기 점검)	7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과제별 주관 부서장 보고	'20.1.1 ~ 6.30
3차 점검	10월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	'20.1.1 ~ 9.30

□ 점검내용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미흡과제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발굴, 조치계획 강구

□ 점검방법 및 결과반영

- 과제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관리과제 성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근거로 점검 실시
 - * 2차 점검(상반기점검, 7월)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5월), 3차 점검(10월)은 위원회 내부점검으로 실시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추진상황 및 이행여부를 점검
 - 과제별 점수·순위가 아닌, '정상추진/지연/사전대비' 여부 점검
- 지연/사전대비과제는 개선·보완 및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관리하고 본평가 시 이행여부를 평가에 반영('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지표)

2. 자체평가

□ **평가일정** : '21. 1. 4. ~ '21. 1. 13. ('20.12.31. 기준으로 평가)

※ '21. 1월 초 실적보고회와 평가 병행

□ **평가대상** : '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14개 관리과제

□ **평가절차 및 방법**

-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과제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과제별 실적 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한 후 평가지원팀 취합
※ 과제별 실적보고서 양식【붙임3】 참조(과제별 최대 30쪽으로 제한)
-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자체평가위 소위원회별로 과제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 소위원회별 평가 참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이 전체 과제 평가
- (평가 실시) 자체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담당과제에 대해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의 객관화를 위해 평균/표준편차일치법 등의 방법을 통해 점수 보정
- (결과 집계 및 이의신청) 주요정책부문 과제에 대한 평가 점수 집계, 최종 결과확정 전 평가 점수(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확인
 -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 평가 점수(안) 개별 공개 → 이의신청 접수 → 타당성 검토 → 결과 통보
 - ※ 자체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붙임4】 참조
- (평가결과 심의·의결) 평가총괄팀이 자체평가위원회별 평가 점수 및 이의신청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제별 평가점수, 평가등급(순위) 등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 및 최종 확정

3. 평가결과 및 등급산출

□ 자체평가 결과 등급분포 기준

-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배분

순위 누적*	등급	과제 수(순위 / 총 14개)
~ 상위 5%이내	1등급(매우 우수)	1개(1위)
5%초과 ~ 20%이내	2등급(우수)	2개(2 ~ 3위)
20%초과 ~ 35%이내	3등급(다소 우수)	2개(4 ~ 5위)
35%초과 ~ 70%이내	4등급(보통)	5개(6 ~ 10위)
70%초과 ~ 85%이내	5등급(다소 미흡)	2개(11 ~ 12위)
85%초과 ~ 95%이내	6등급(미흡)	1개(13위)
95%초과 ~	7등급(매우 미흡)	1개(14위)

* 순위 누적 % = (순위/총 과제 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21. 1월)

- 확정된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국조실 작성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평가총괄팀)
- 결과보고서에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

□ 자체평가 결과공개

- 국회 상임위(정무위)에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통해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21.2월)
- ※ 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공통자료」→「정책·평가」메뉴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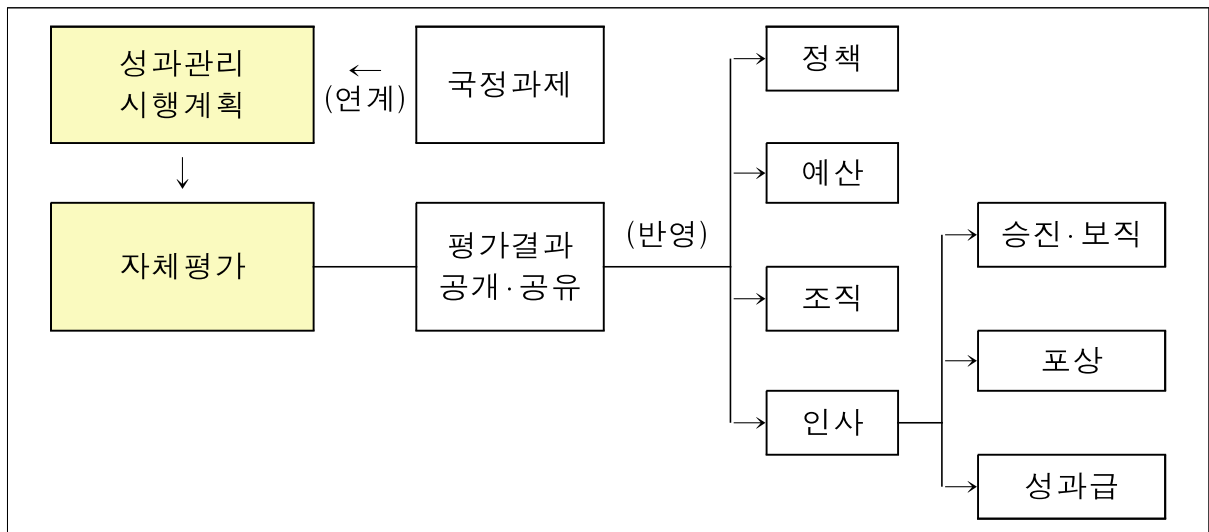
4.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사전검토	3월중	☞ 20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및 자체평가계획(안) 검토
계획 수립	4월	☞ 20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차 중간점검	5월	☞ 4.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내부)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5월	☞ 제7기 자체평가위원 대상 워크숍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	6월	☞ 부서별 평가담당자 대상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차 중간점검 (상반기점검)	7월	☞ 6.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 ※ 제3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3차 중간점검	10월	☞ 9.30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내부)
실적보고회 및 평가 실시	'21.1월	☞ 평가실적보고회 개최 ☞ 12.31 기준 각 과제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종합 평가 실시 ※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체평가결과 확정	'21.1월	☞ 평가 결과 집계, 이의신청,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자체평가결과 공개	'21.2월	☞ 평가결과 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및 국회 보고(상세본)

※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현장점검 실시여부는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1. 기본원칙

- 평가결과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는 적극 확산시키고, 미흡과제의 개선점을 발굴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
-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하고, 문제점의 진단·분석을 통해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과제 발굴·추진
- 부서·개인 성과평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략목표·주요정책과 부서·개인의 목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 제고 동기부여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 환류

- 상반기 점검결과는 하반기 정책 추진 시 반영, 하반기 최종 점검·평가결과는 '21년도 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 예산 환류

- 평가결과를 예산투입 필요성 재검토, 사업 조정 및 추진 방식 개선 등에 활용해 중기재정계획 및 차기 예산 편성과 연계 강화
-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미흡과제는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조직 환류

- 평가결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의 경우 조직역량 등에 대한 정밀분석·진단*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등에 대한 진단 실시
- 조직역량 진단결과를 인력 배치·전환,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조직 효율성 제고

3. 평가결과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위원장 포상 수여('21.3월)
-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결정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
 -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성과평가(100%) 중 자체평가결과(52.0%) 반영
 - (4.5급 이하 직원) 성과평가(100%) 중 자체평가결과(45.5%) 반영
- ※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성과평가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정부업무평가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및 직원 간담회, 상반기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전파(수시)
※ 점검회의 후, 평가담당 부서는 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를 모든 부서 직원과 공유하고, 직원 대상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확산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판단기준	배점
1. 정책설계 (20)	1.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도	10
	2. 과제수단의 적절성	○ 과제수단의 적정성 ○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10
2. 정책집행 (20)	1. 추진계획 준수정도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3
	2.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여건·상황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대처 및 장애요인 개선·극복 노력	10
	3.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도	○ 타부처/관련부서/외부기관 등과의 협업 성과	7
3. 정책성과 및 효과 (60)	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 목표치 달성 정도	20
	2. 정책효과	○ 종합적 정책효과 및 향후 기대효과	20
	3.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 ○ 홍보의 효과성	10
	4. 정책 환류 노력도	○ 중간 점검결과 개선·보완 및 적극적 관리 노력	10
3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100

※ 가점(5점) :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국정현안 추진 노력도·기여도(3점)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 적절성(10점)												
평정방법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도 ① ㉠,㉡ 모두 '상'일 때 : 매우우수 ②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우수 ③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보통 ④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 : 미흡 ⑤ ㉠,㉡ 모두 '하'일 때 : 매우미흡 <table><tr><th>구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tr><th>점수</th><td>10</td><td>8</td><td>6</td><td>4</td><td>2</td></tr></table> * 가점(+0.5점) :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사회적 가치 관련 성과지표 설정 여부 (가점을 합하더라도 10점을 넘지 못함)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세부 측정기준	㉠ 성과지표 대표성(상/중/하) - 성과지표와 과제내용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며 구체적인지 여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성과지표인지 여부 ※ 산출·결과지표로 성과지표 구성 - 성과지표의 정의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도(상/중/하)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부서내 토론·검토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 - 성과지표 수립과정에 자체평가위원과 관련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예시) 관리과제A의 성과지표가 2개인 경우(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 : 대표성이 '상', 설정노력도가 '상' → '매우우수' / 10점 - 성과지표 b : 대표성이 '중', 설정노력도가 '중' → '보통' / 6점 ⇒ 관리과제 A의 점수 = 8점(10 × 1/2 + 6 × 1/2)												
평가근거	○ 성과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설명자료 ○ 성과지표 설정 관련 자료 - 성과지표 설정 시 부서 내 토론·검토 실적자료, 증빙자료 -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위,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여부												

< 참고 > 13개 사회적 가치의 주무부처와 주요 의미

사회적 가치	주무부처	주요 의미
인권	법무부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안전	행안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보건	복지부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	고용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통합	복지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상생협력	중기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일자리	고용부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행안부 분권위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	산업부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기업의 사회적책임	산업부 중기부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	환경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참여	행안부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시민사회	총리실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평가지표	1-2. 과제수단의 적절성(10점)												
평정방법	○ 관리과제의 목표 달성 및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한 과제수단의 적절성 여부 평가 ㉑ 과제수단의 적정성 ㉒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① ㉑,㉒ 모두 '상'일 때 : 매우우수 ② ㉑,㉒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우수 ③ ㉑,㉒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보통 ④ ㉑,㉒ 중 1개 '중', 1개 '하'일 때 : 미흡 ⑤ ㉑,㉒ 모두 '하'일 때 : 매우미흡 <table> <tr> <th>구분</th> <th>매우우수</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r> <th>점수</th>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세부 측정기준	㉑ 과제수단의 적정성 : 세부사업 등 관리과제의 하위 과제수단이 과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판단(상/중/하) - 과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등을 망라하는 등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과제목표 달성에 충분할 정도로 과제수단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 ㉒ 추진계획의 충실성 : 추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상/중/하) - 관리과제 추진에 필요한 분기별 일정이 구체적인지 여부 -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 계획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평가근거	○ 당해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업무계획 등 관련 자료, 정책·사업 설명자료 등												

평가지표	2-1. 추진계획 준수정도(3점)										
평정방법	○ 관리과제별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했는지 여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 일정 준수정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그에 따라 배점 부여 <table><tr><td>일정 준수율</td><td>100%</td><td>100%미만 ~90%이상</td><td>90%미만 ~80%이상</td><td>80%미만</td></tr><tr><td>점수</td><td>3</td><td>2</td><td>1</td><td>0</td></tr></table>	일정 준수율	100%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점수	3	2	1	0
일정 준수율	100%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점수	3	2	1	0							
세부 측정기준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일정 준수로 판단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아래 '예시' 참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준수'로 인정 가능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대북관계 포함)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사회적으로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평가근거	○ 당해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각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 실적										

평가지표	2-2.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10점)												
평정방법	○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여부 평가 ㉠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충실성 및 대응의 적정성 ㉡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 ① ㉠,㉡ 모두 '상'일 때 : 매우우수 ②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우수 ③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보통 ④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 : 미흡 ⑤ ㉠,㉡ 모두 '하'일 때 : 매우미흡 <table><tr><th>구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tr><th>점수</th><td>10</td><td>8</td><td>6</td><td>4</td><td>2</td></tr></table> * 여건·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충실성 여부를 판단 ① 매우 충실 : 9, ② 충실 : 7, ③ 보통 : 5, ④ 미흡 : 3, ⑤ 매우 미흡 :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세부 측정기준	㉠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충실성 및 대응의 적정성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집행현장을 점검·확인하는 등 과제 추진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모니터링은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 - BH, 당,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의견조율을 통해 여건·상황 변화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 - 모니터링의 결과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문제를 해결 하였는지 여부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평가근거	○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대응 실적자료												

평가지표	2-3.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도(7점)											
평정방법/ 세부 측정기준 ○ 정책 추진과정(계획수립·집행 등)에서 관련부서/타부처/외부기관 등과의 협업노력 및 협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table> <tr> <td>구분</td> <td>매우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미흡</td> </tr> <tr> <td>점수</td> <td>7</td> <td>5.5</td> <td>4</td> <td>2.5</td> <td>1</td> </tr> </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7	5.5	4	2.5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7	5.5	4	2.5	1							
세부 측정기준 ○ (관련기관과의 협업 노력도) - 관련부서/타부처/외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여부 - 관련부서/타부처/외부기관 등과 협의 실적 및 협의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여부 ○ (협업 성과) - 타부처/관련부서/외부기관 등과 유기적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수범사례를 평가 -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제도개선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 성과가 나타난 경우 우수 이상의 점수 부여												
평가근거	○ 관련부서/타부처/외부기관 등과의 협업과정 및 이행실적 관련 자료											

평가지표	3-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점)																				
평정방법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별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목표치의 적극성(상/중/하)을 반영하여 목표달성도 등급(SS~D)을 산정, 각 성과지표별로 등급별 점수 부여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각 성과지표의 등급별 점수를 평균하여 전체점수 산정 <table><tr><td>구분</td><td>SS</td><td>S</td><td>A</td><td>B</td><td>C</td><td>D</td></tr><tr><td>점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8</td><td>5</td></tr></table>	구분	SS	S	A	B	C	D	점수	20	17	14	11	8	5						
구분	SS	S	A	B	C	D															
점수	20	17	14	11	8	5															
세부 측정기준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상/중/하) ※ 구체적인 판단기준 「별첨」참조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실적치 또는 유사사업의 실적치가 있는 경우 과거 3년간 실적치 추세를 감안하여 판단 - 법률 제·개정, 계획 수립 등 정량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유사사례 통계,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수준,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목표치 달성 여부를 실적에 근거하여 판단 - ①초과달성 : 110% 이상 / ②달성 : 110% 미만 100% 이상 ③일부 미달성 : 100% 미만 80% 이상 ④ 미달성 : 80% 미만 ※ 지표의 특성상 100% 초과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임계치가 100이고 임계치 100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 100% 달성할 경우 초과달성 인정 가능 ○ 등급산정 기준 <table><tr><td>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td><td>초과달성 (110%이상)</td><td>달성 (110%미만 100%이상)</td><td>일부 미달성 (100%미만 80%이상)</td><td>미달성 (80%미만)</td></tr><tr><td>상</td><td>SS</td><td>S</td><td>A</td><td>B</td></tr><tr><td>중</td><td>S</td><td>A</td><td>B</td><td>C</td></tr><tr><td>하</td><td>A</td><td>B</td><td>C</td><td>D</td></tr></table>	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초과달성 (110%이상)	달성 (110%미만 100%이상)	일부 미달성 (100%미만 80%이상)	미달성 (80%미만)	상	SS	S	A	B	중	S	A	B	C	하	A	B	C	D
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초과달성 (110%이상)	달성 (110%미만 100%이상)	일부 미달성 (100%미만 80%이상)	미달성 (80%미만)																	
상	SS	S	A	B																	
중	S	A	B	C																	
하	A	B	C	D																	
평가근거	○ (목표치 적극성) 지표통계(최근 3년 추세치, 평균, 전년대비) 등 적극성 관련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 ○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측정결과 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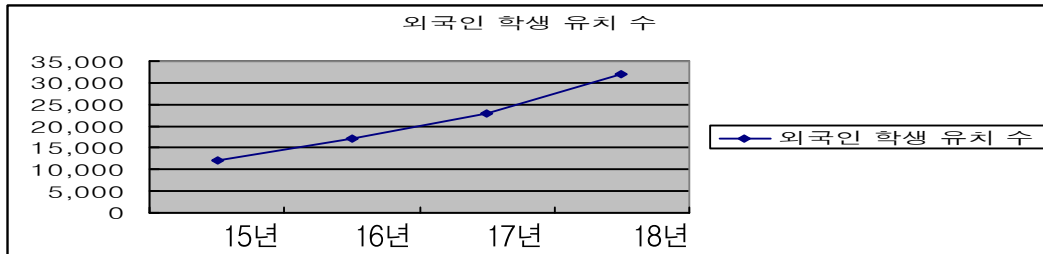
【별첨】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①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반영한 경우 : 상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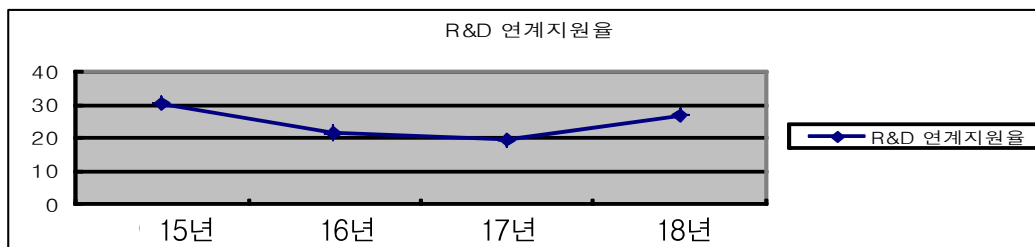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14~'15년 5%상승, '15~'16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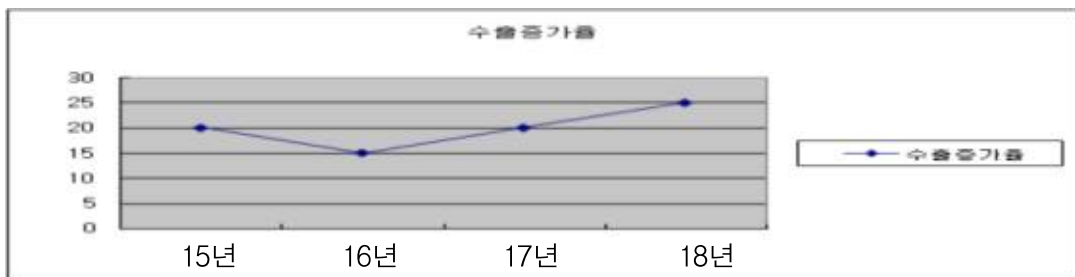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④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 하향국면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 : 5% → 5.5% (상승률 10%), 50% → 55% (상승률 10%)]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정성적으로 판단
- 피평가부서는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 평가 판단자료 제시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단순히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국회의 사정으로 법률 제·개정이 지연되고 관련부서의 노력이 충분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 (예시) IMD 국제경쟁력 평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실시하는 국제 경쟁력 평가로 1989년부터 매년 실시 중
- (예시)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국제경제포럼(WEF)에서 실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로 1979년부터 매년 실시 중

평가지표	3-2. 정책효과(20점)												
평정방법	○ 정책과제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점수</td><td>20~17</td><td>16~13</td><td>12~9</td><td>8~5</td><td>4~1</td></tr></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7	16~13	12~9	8~5	4~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7	16~13	12~9	8~5	4~1								
세부 측정기준	①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 - 해당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성공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 정책수행으로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정책과제 추진 결과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정도 - 선정된 성과지표 외에 통계 또는 대표수치의 변화 등 계량화된 정책효과와 통계·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 없는 정책효과를 종합 평가 ※ 정책수행으로 인해 국민의 인식, 문화 등이 개선되었는지 여부 ③ 신규사업 등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향후 기대되는 효과 정도 - 제도·기반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추진으로 향후 정책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명확한 경우 우수 이상의 점수 부여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이하의 점수 부여 ※ 향후 기대효과를 대상별/시기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평가근거	○ 정책효과 판단 근거 자료 (담당부서 제출 실적자료, 관련 통계 및 수치) ○ 언론보도 자료												

평가지표	3-3.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10점)												
평정방법	○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을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점수</td><td>10</td><td>8</td><td>6</td><td>4</td><td>2</td></tr></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세부 측정기준	○ 정책홍보 노력 - 정책홍보를 위한 노력을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대외 홍보가 곤란한 과제는 내부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 (정책홍보 노력 평가 요소)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 홍보콘텐츠 제작, 방송·캠페인·온라인 홍보 활동 실적 및 외부기관 주관 토론회·간담회·공청회 등에 참여를 통한 소통 실적 • 방송·언론보도 실적 - 신문·방송·온라인 언론 보도의 정량적 실적과 언론 보도 내용의 긍정·부정 여론 경향을 평가 • 언론오보 대응을 통한 현안 이슈 대응 - 언론오보 등 발생한 위기상황과 부정적 여론에 신속하게 대응, 위기와 부정여론 확산 최소화에 노력했는지 여부 ○ 홍보 효과성 -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이슈를 주도하거나, 언론·국민여론 등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는 등 홍보 활동에 우수한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												
평가근거	○ 정책홍보 관련 실적, 증빙자료												

평가지표	3-4. 정책 환류 노력도(10점)																																		
평정방법	○ 분기별 중간점검에 따른 개선·보완 필요사항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 여부를 평가 ① '19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 ②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																																		
평정방법/ 세부 판단기준	○ 정책 환류 노력 <table><tr><td>구분</td><td colspan="5">① '19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5점)</td></tr><tr><td rowspan="2">배점</td><td>매우우수 (5점)</td><td>우수 (4점)</td><td>보통 (3점)</td><td>미흡 (2점)</td><td>매우미흡 (1점)</td></tr><tr><td>'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td><td>'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td><td>'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어느정도 이행된 경우</td><td>'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td><td>'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td></tr></table> <table><tr><td>구분</td><td colspan="5">②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5점)</td></tr><tr><td rowspan="2">배점</td><td>매우우수 (5점)</td><td>우수 (4점)</td><td>보통 (3점)</td><td>미흡 (2점)</td><td>매우미흡 (1점)</td></tr><tr><td>'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td><td>'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td><td>'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어느정도 이행된 경우</td><td>'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td><td>'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td></tr></table> ※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 개선필요사항이 없는 과제는 '19년 정부 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 정책개선 반영 점수의 2배 인정	구분	① '19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5점)					배점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어느정도 이행된 경우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	구분	②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5점)					배점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어느정도 이행된 경우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
구분	① '19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5점)																																		
배점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어느정도 이행된 경우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	'19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																														
구분	②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5점)																																		
배점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이에 따라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우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실제 성과는 부족한 경우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어느정도 이행된 경우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이 형식적으로 이행된 경우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미흡·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노력 수행이 없는 경우																														
평가근거	○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평가지표	가점 항목(5점)
------	-----------

평정방법

○ 국민참여 정책평가(2점) 국민참여 정책평가 결과 <table> <tr> <th>구분</th><th>매우우수 (2개 과제)</th><th>우수 (3개 과제)</th><th>보통 (4개 과제)</th><th>미흡 (3개 과제)</th><th>매우미흡 (2개 과제)</th></tr> <tr> <td>점수</td><td>2</td><td>1.6</td><td>1.2</td><td>0.8</td><td>0.4</td></tr> </table> - 청백리포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국민생각함 국민참여단 등 활용 (10~11월 평가예정) ※ 특정 부서와 관련이 있는 평가단의 경우, 관련 부서가 포함된 관리과제 평가시 제외 ○ 국정현안 추진 노력도·기여도(3점) ① 과제계획과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업무 평가(국조실 특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 3점 ② 과제계획과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업무 평가(국조실 특정평가) 결과가 보통인 경우 : 2점 ③ 과제계획과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1점 ④ 과제계획과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여 정부업무평가(국조실 특정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 0점 ※ 과제계획과 성과지표를 모두(100%)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의 점수에 1점을 뺀 점수를 부여(단, 0점 이하인 경우, 0점 처리)	구분	매우우수 (2개 과제)	우수 (3개 과제)	보통 (4개 과제)	미흡 (3개 과제)	매우미흡 (2개 과제)	점수	2	1.6	1.2	0.8	0.4
구분	매우우수 (2개 과제)	우수 (3개 과제)	보통 (4개 과제)	미흡 (3개 과제)	매우미흡 (2개 과제)							
점수	2	1.6	1.2	0.8	0.4							

1 관리과제명(I -1-①) [전략목표-성과목표-과제번호]

□ 추진배경(목적)

○ 동그라미는 휴먼명조 15pt

- 하이픈은 휴먼명조 15pt

※ 참고는 맑은고딕 13pt

* 사업추진의 근거(법령·규정·지침)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제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동그라미는 휴먼명조 15pt

- 하이픈은 휴먼명조 15pt

* 정책·사업의 주요 내용, 주요 정책수단 및 과제추진 계획 등을 월별 단위까지 상세히 작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월	
2/4분기		'20.5월	
3/4분기			
4/4분기			

☐ 수혜자·이해관계집단 및 현장의견 반영계획

-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현장의견 반영 계획 >

세부사업명	현장의견 수렴 필요성	현장의견 수렴 방법	현장의견 활용 방안

☐ 홍보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월	
2/4분기		'20.5월	
3/4분기			
4/4분기			

☐ 기대효과

○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9	'20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 -1-일반재정②) ²⁾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 ³⁾			a+b (전체단위 사업비) ⁴⁾	a'+b' (전체단위 사업비) ⁴⁾
	■ 세부사업명(코드번호)		a	a'
	■ 세부사업명(코드번호)		b	b'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 -1-일반재정②) ²⁾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 ³⁾			a+b (전체단위 사업비) ⁴⁾	a'+b' (전체단위 사업비) ⁴⁾
	■ 세부사업명(코드번호)		a	a'
	■ 세부사업명(코드번호)		b	b'

1) 회계구분란에는 회계명 또는 기금명 표기

2)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의 관리과제명과 관리코드(일반재정 · R&D · 정보화 구분) 표기

3) 단위 · 세부사업명 옆의 괄호에는 사업코드를 기재(예 : 1101, 101)

4)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관리과제)을 모두 포함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가 재정사업내 하나의 단위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 회계 표기(세부사업명 나열 불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가 재정사업내 2개 이상의 단위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해당 단위사업에 대해 각각 사업비, 회계 표기(세부사업명 나열 불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가 재정사업내 단위사업(갯수 무관) 내의 일부 세부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세부사업명 및 사업별 금액을 표기하고 괄호 안에 단위사업의 전체사업비를 표기

[예시1] 농식품부 소관 성과계획서상 1개 관리과제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개 과제와 연계되는 경우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검역검사 정보화(Ⅰ-4-정보화①)			
① 검역검사 정보화(6632)	일반회계	71 (71)	75 (75)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예시2] 농식품부 소관 성과계획서상 2개 관리과제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개 과제와 연계되는 경우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농산물 안전성 관리(Ⅰ-1-일반재정①)			
① 농산물안전성관리(6032)	농특회계	480 (480)	477 (477)
축산물 위생 안전성(Ⅰ-1-일반재정②)			
① 축산물위생안전성(3739)	농특회계	42 (42)	43 (43)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예시3] 농식품부 소관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내 일부 세부사업이 성과관리시행 계획상 1개 과제와 연계되는 경우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자율관리어업 육성(Ⅲ-2-일반재정⑥)			
① 자율관리어업육성(3142)	농특회계	117 (128)	118 (131)
■ 자율관리어업 육성(301)		117	118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종류	
	'17	'18	'19					정량화 여부	성격/ 내용
성과지표명					'20년 목표치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 (예시)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9년도 실적인 ○○을 감안하여 '20년에 ~할 것을 목표로 설정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 < 지표명 >

- (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설명
- (목표치의 적극성) 성과지표 목표치가 과거 실적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작성 방법 >

- * 성과지표 설정 :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포함(공통지표)하여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 강화
 - 1개 관리과제 내 가능한 1개 이상 공통지표 포함
 - '20년 성과계획서와 공통지표인 경우에는 성과지표명 옆에 (공통)이라고 표시
- * 목표치 : 신규 사업으로서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목표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20년 목표치를 제시하되, 과거 실적 부분('17~'19년 실적)에는 “신규”로 표기
 - '20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와 공통지표인 경우, 목표치 변경 불가
- * 측정방법 : 만족도조사, 통계확인, 성취도 확인 등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사례]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PCRM 고객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 측정산식 :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 (측정산식, 비교근거, 만족도 조사의 척도 등)
- *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출처 기재, 특히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제시,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이 부분에서 이를 미리 밝혀야 함
- *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 지표의 성과달성도 확인시 참고할 사항, 표본의 대상, 성과측정 시 고려사항 등

[사례] 한 업체가 여러 개 제품을 인증·시험하였을 경우 별도 합산

《 참고자료 》

성과지표의 유형

□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른 분류

-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

구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성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시 동일한 결과 도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사례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 명당 5대범죄 발생율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제시되는 성과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

구분	개념	특성
투입지표	·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율	·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 수	·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수료 후 소득증가율	·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I - 1 - ① 관리과제명

1. 과제 개요

□ 과제 목표

○

-

※

- ▶ 과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괄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 국정과제 과제목표 등을 종합하여 해당 국정과제의 정책목표를 간략히 적시

□ 대내외 정책추진여건

○

-

- ▶ 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대내외적 유·불리한 여건, 환경변화, 갈등요인, 동향 등을 간략히 제시

□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

-

※

- ▶ 과제의 주요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등의 중요내용과 정책수단을 기술
- ▶ 과제의 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정책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관련제도, 법령 개정 등)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유의하여 기술
- ▶ 다만, "평가지표별 작성양식"이 별도로 있음을 감안하여 핵심적 실적 위주로 작성
- ▶ 추진실적은 과제 세부계획상 추진계획 및 일정, 성과지표와 연계 또는 비교하여 기술
- ▶ 실적이 부진하거나 목표가 미달성된 원인이 외부환경 요인의 변화 등이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함께 기술

2. 주요 정책성과



-

※

- ▶ 과제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수치화된 성과*** 위주로 작성
 - * 성과관련 통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를 활용, 통계 출처는 반드시 병기할 것
- ▶ 주요 법령 제·개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과제의 추진실적에 따른 정책성과 및 효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
 - * 기존에 제출했던 국정과제 관련 통계 반영 및 **구체적 통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질적 수준을 충분히 서술
- ▶ 정책 성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가 초래된 정도를 기술
 - * 산출물, 국민여론, 국회 평가, 정책담당자 자평, 언론보도결과, 사회지표 등을 종합 검토
- ▶ 다년도 정책과제인 경우, 과거 실적과도 연계하여 기술
- ▶ 과제 추진실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정책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과제 추진실적과 정책성과간의 밝혀진 상관관계를 토대로 **중·장기적 효과를 추정**하여 기술

3.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선·보완 사항)

- ▶ 당초 의도했던 성과 달성이 어렵거나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기술
 - * 추진일정 지연 또는 목표 달성 곤란 예상
 - * 가시적 성과 부족
 - *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 또는 적기 대응 미흡으로 국민 불편 초래
 -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인한 정책 지연
 - * 제도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한 정책효과 저하
 - * 홍보 부족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야기
 - * 기타 국민여론, 국회평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되었던 부정적 사례 등
- ▶ 각 쪽지 마지막(☞)에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보완방향을 반드시 기술

4.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 정책설계단계

평가지표(1-1) : 성과지표의 적절성(10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도
----------------------------	--------------------------------------

○ 성과지표의 대표성

-

※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도

-

※

【근거자료】

*

*

평가지표(1-2) : 과제수단의 적절성(10점)

- ▲ 과제수단의 적정성
- ▲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 과제수단의 적정성

-

※

○ 과제추진계획의 충실성

-

※

【근거자료】

*

*

□ 정책 집행 단계

평가지표(2-1) : 추진계획 준수정도(3점)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별 과제추진 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 준수여부
---------------------------	--

○ 과제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준수 여부
1/4분기	○	○ -	준수 / 미준수
	○	○ -	준수 / 미준수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일정 준수율			%

【근거자료】

*

*

평가지표(2-2)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10점)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의 수정·변경 여부

○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충실성 및 대응의 적정성

-

※

○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

-

※

【근거자료】

*

*

평가지표(2-3) :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업도(7점)

▲ 타부처·관련부서·외부기관 등과의
협업 성과

○ 관련기관과의 협업 노력도

-

※

○ 관련기관·부서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성과

-

※

【근거자료】

*

*

□ 정책성과단계

평가지표(3-1) :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20점)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	--

○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적극성

-

※

○ 과제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부서 판단	
			성과지표 달성도	종합 달성도

【근거자료】

*

*

평가지표(3-2) : 정책효과(20점)

▲ 정책과제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

-

※

○ 정책과제 추진 결과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정도

-

※

○ 신규사업 등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향후 기대되는 효과 정도

-

※

【근거자료】

*

*

□ 정책소통 및 환류단계

평가지표(3-3) : 정책홍보 노력 및 효과성(10점)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 ▲ 홍보의 효과성
--------------------------------	-----------------------------

○ 정책 홍보 노력

-

※

○ 홍보의 효과성

-

※

【근거자료】

*

*

평가지표(3-4) : 정책 환류 노력도(10점)

▲ 중간점검 결과 등 개선·보완 및
적극적 관리 노력

- '19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
- 점검결과 등 개선·보완 및 적극적 관리 노력

※

- '20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 여부
- 점검결과 등 개선·보완 및 적극적 관리 노력

※

【근거자료】

*

*

자체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 50 –